금융위원회		•생산적 금융				
무용취단되	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8.5.29.(화)	•포용적 금융
책 임 자			담 당 자		권 진 웅 사무관 (02-2100-2805)	

# 제 목: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」개정 더 예측 가능하고, 신속하게 회신하겠습니다.

## 1 개정 배경

- □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('15.3.31) 이후 3년이 지나면서 **법령해석**· 비조치의견서 접수건수 및 회신건수는 증가 추세<sup>\*</sup>
  - \* 법량해석 접수간수: (15) 248건 (16) 409건 (17) 362건 / 호산간수: (15) 203건 (16) 378건 (17) 353건
  - '15.4월~'18.4월말까지 **총 1136건이 접수**되었으며, 그 중 **1023건을 회신 완료**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
- □ 다만,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**법령해석** 회신 지연, 비조치의견서의 긴 처리기한 등 제도 개선과제 발견
  - 신청회사의 **회신 예측가능성을 제고**하고, **신속한 비조치의견서 회신**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」 개정 추진
- 2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」개정안 주요 내용

### 가. 기한 연장 사유 및 사전통보제도 도입

□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, 법률자문 등 **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**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6조제10항)

기한	연장시	연장	전	신청회사에	사유와	회신계획을	사전에	통보
하도	록 규정히	하여 3	회신	예측가능성	제고(인	· 제6조제11항	)	

#### 나,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 단축

□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(안 제6조 제8항)

#### 다. 신속한 소관 지정 절차 규정

- □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시 **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**하도록 규정(안 제6조제2항·제4항),
- □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**관련 부서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**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제5항)

### 3 향후 일정

□ 개정안 사전예고('18.5.29~6.14), 금융위원회 의결(6월중) 등을 거쳐 **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」을 시행**할 예정

### < 금융 용어 설명 >

-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: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
- 비조치의견서 :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·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



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